

의안번호	제3050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1.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0호
----------	--------

제출연월일: 2026. 1. 9.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전입세대 요건 및 결혼축하금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인구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책 추가, 기존 시책 확대·수정 등 세부 지원기준 명확화를 통해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요건 완화(안 제2조제4호)
- 나.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안 제3조제1항제5호)
- 다. 시책 및 지원항목별 조항 정비(안 제3조)
- 라.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완화(안 제4조제1항제1호)
- 마.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의 표기 수정(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안 제4조제1항제4호까지, 안 제7조)
- 바. 별표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명확화 및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증액(안 별지)
- 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설 지원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추가(안 별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협의

1)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5338(2024. 10. 24.)호]

2)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조건부 협의[사회보장조정과-4357(2025. 9. 19.)호]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 연령대에 유사사업 도입 및
확대할 경우 해당 사업 조정할 것

3)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43695(2025. 11. 14.)호]

라. 기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786호

가) 예고기간: 2025. 11. 10.~2025. 12. 1.(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군·구”를 “시군구”로,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 중 “존·비속”을 “존비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입고등학생”이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혼축하금 지원: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다자녀세대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입세대는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를 “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하거나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u>시·군·구</u>에 주민등록을 <u>2년</u>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세대를 말한다.</p> <p>5. (생략)</p> <p>6.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u>존·비속</u>,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p> <p>7. ~ 10.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시군구</u> ----- ----- <u>1년</u> ----- -----.</p> <p>5. (현행과 같음)</p> <p>6. ----- ----- <u>존</u> <u>비속</u>----- -----.</p> <p>7. ~ 10. (현행과 같음)</p> <p>11. “<u>전입고등학생</u>”이란 <u>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u>군수</u>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p>	<p>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u>고성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p>

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방첩약 지원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한다.

<신 설>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출산장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혼축하금 지원: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
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한방첩약 지원: 제3조제1
항제1호 나목 대상자 중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
생아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
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
정

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모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다.

4. 다자녀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등을 지원할 수 있

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2. 다자녀세대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입세대는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주민세·재산세(주택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5. 전입세대에게는 공공시설이
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
(주택분)·주민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
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
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
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5.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
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
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에 군수가 인
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② (생략)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1. -----
----- 읍면장 -----

----- 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하고, 결혼축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읍면장 -----

-----.

2. 읍면장 -----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
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
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내
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4.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
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
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 추
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읍·
면, 마을 및 기관·단체 유공자
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

3. -----

----- 읍면장 -----

-----.

4. 읍면장 -----

-----.

② (현행과 같음)

----- 읍면 -----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현행)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산 산 려	결혼축하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대상자에게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r> <tr> <td>금액</td> <td>5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r> <td>시기</td> <td>신청일로부터 익월</td> <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 출산모에게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 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	
	재산세 (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0000. 00. 00.>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산려	결혼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대상자에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부부 중 1명이 기지급받은 후 재혼한 경우 지급 불가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r> <tr> <td>금액</td> <td>5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r> <td>시기</td> <td>신청일로부터 익월</td> <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대상자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첫째아이 2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4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r> <tr> <td>첫째</td> <td>100만원</td> <td>100만원</td> <td>-</td> </tr> <tr> <td>둘째</td> <td>200만원</td> <td>200만원</td> <td>-</td> </tr> <tr> <td>셋째 이상</td> <td>200만원</td> <td>4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시기</td> <td>신청일로부터 익월</td> <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p>○ 단,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증액분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다.</p>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첫째	100만원	100만원	-																					
둘째	200만원	2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대상자에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라목 대상자에 지원(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탈아 동일 적용)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생애 1회 한정)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액 지원	
	재산세 (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 추가 전입으로 2인 세대 구성 시에도 지원	○ 전입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관내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고등학생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 지원금액: 학기별 3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가.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5호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전입고등학생에게 관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기별 3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증액**

가.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나목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출산장려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고등학생
- 2) 사업규모

[2026년] 300천 원* 70명*2학기 = 42,000천 원

[2027년] 300천 원*140명*2학기 = 84,000천 원

[2028년~] 300천 원*210명*2학기 = 126,000천 원

*** 출산장려금 지원 증액**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2) 사업규모

[2026년] 182,500천 원

첫째: 500천 원*75명+1,000천 원*25명 = 62,500천 원
 둘째: 1,000천 원*45명+2,000천 원*15명 = 75,000천 원
 셋째: 1,000천 원*20명+3,000천 원* 5명
 +2,000천 원* 5명 = 45,000천 원

[2027년] 21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75명 = 75,000천 원
 둘째: 2,000천 원*45명 = 90,000천 원
 셋째: 1,000천 원* 5명+4,000천 원* 5명
 +2,000천 원*10명 = 45,000천 원

[2028년] 30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100명 = 100,000천 원
 둘째: 2,000천 원* 60명 = 120,000천 원
 셋째: 4,000천 원* 15명+2,000천 원*10명 = 80,000천 원

[2029년~] 320,000천 원

첫째: 1,000천 원*100명 = 100,000천 원
 둘째: 2,000천 원* 60명 = 120,000천 원
 셋째: 4,000천 원* 20명+2,000천 원*10명 = 10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세출	군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재원	의존재원	-	-	-	-
자체재원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조달	기 타		-	-	-	-
	소 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재원조달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1,836,500
자체	소 계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1,836,500
	지방세	224,500	294,000	426,000	446,000	446,000	1,836,500
수입	세외수입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6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예정

3. 관련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